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6호 2018. 3. 30(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8-3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안) ----- 1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8-577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 공고 ----- 4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8 - 3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3월 30일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현황

저수지명	위치	규모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수해면적 (ha)	총저수량 (천톤)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옥전제	전북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393-3번지 일원	7.6	10.4	93	5.9	남원시장 (농정과)	정밀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	
과리제	전북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583번지 일원	4.2	7.6	209	3.5	남원시장 (농정과)	정밀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	

2. 지정사유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재해위험 지역으로 선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관리하기 위함.

3. 저수지 관리자

가. 명칭 : 전라북도 남원시(농정과)

나.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8. 3. 30.

6. 문의처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4), 농정과(063-620-6388)

붙임 자연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도면 : 1부(따로붙임)

자연재해위험저수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및 전경사진(옥전제)



□ 위치도 및 전경사진(과리제)



남원시 공고 제2018-577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정의,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 운영시간 및 휴관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기능, 회의, 간사, 위원장의 직무, 위촉해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 (참조 : 문화예술과장)
 - 주소 :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7), 직접 방문 등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의 정의,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5조)
- 나.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 운영시간 및 휴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11조)
-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8조)
 - 위원회 기능, 회의, 간사, 위원장의 직무, 위촉해제, 자료의 교환
 - 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3. 28 ~ 2018. 4. 17(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의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남원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사서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 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문화조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개관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기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

제10조(회원 및 자료 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서대출 기간은 10일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 참고도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안전)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이관·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

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 중에서 정하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 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